

# 주요법제의 손해배상범위에 관한 규정

명 순 구

## 프랑스 민법전

**제1149조:** 채권자가 요구할 수 있는 손해배상의 범위는, 이하에서 정하는 예외 및 변경사항의 경우 이외에는, 그가 입은 현실손해 및 일실이익을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.

**제1150조:**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경우에 채무자는 계약체결시에 예견하였거나 예견할 수 있었던 손해에 대하여만 배상책임이 있다.

**제1151조:** 채무불이행이 고의에 의한 경우라 할지라도 채권자가 입은 당해 현실손해 및 일실이익이 계약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결과인 경우에 한하여 손해배상범위에 포함된다.

손해배상범위의 최종한계: 채무불이행의 직접적이며 즉각적인 결과.  
∴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배상범위는 직접·즉각손해에 한정(제1151조).  
고의 이외의 채무불이행채무불이행의 경우: 예견손해의 배상(제1150조).  
그러나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는 예견손해가 아니라 하더라도 배상범위에 포함.

## 독일 민법전

**제249조:** 손해배상을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는 배상의무를 발생하게 한 사정이 없었더라면 있었어야 할 상태를 회복하여야 한다. 신체의 상해 또는 물건의 훼손으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하는 경우 채권자는 원상회복을 청구하는 대신에 이에 필요한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 영국의 **Hadley v. Baxendale** 판결(1854년)

#### 사실관계

원고 Hadley는 제분공장을 경영하고 있는데, 제분기의 회전축이 파손되어 제분기를 가동할 수 없게 되었으므로 그 회전축을 모델로 한 새로운 회전축을 복제하기 위하여 고장난 회전축을 Greenwich에 있는 기계제작소로 보내야 하였다. 이에 Hadley는 운송업자 Baxendale과 운송계약을 체결하였는데, 이 계약에 따라 Baxendale은 고장난 회전축을 기계제작소로 보내고 새로운 회전축을 Hadley에게

가져다 주어야 할 채무를 지게 되었다. 그런데 Hadley는 Baxendale의 과실로 인하여 약정기일로부터 며칠이 지난 후에야 새로운 회전축을 수령할 수 있었다. 이로 인하여 Hadley는 수일동안 작업을 할 수 없었다.

이에 Hadley는 Baxendale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조업이 정지되었다는 것을 이유로 Baxendale에게 그 기간동안 조업을 했더라면 얻을 수 있었을 이익에 대한 배상을 청구하였다.

### 판시내용

계약당사자 중의 일방이 계약채무를 위반한 경우에 타방이 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손해는 사물의 통상적 경과에 비추어 볼 때(according to the usual course of things) 채무자의 입장에서 공정하고 합리적(fairly and reasonably)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손해 또는 계약체결시에 양당사자가 당해 계약의 위반이 있는 경우에 그 위반의 개연적 결과(probable result)로서 합리적으로 예견할 수 있었을 손해이다.

그런데 이 사안에서 채무자 Baxendale이 알고 있었던 것은 운송을 의뢰한 Hadley가 재분업자라는 사실 및 운송물이 고장난 회전축이라는 사실에 불과하며 운송이 지연됨으로 인하여 채권자 Hadley가 이익을 얻을 수 없을 것이라는 사실은 계약체결시에 알려져 있지 않았다(즉 Baxendale로서는 Hadley가 예비용 회전축으로 조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).

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, hadley가 주장하는 손해는 Baxendale의 채무불이행이라는 사실과 너무 멀다(too remote)고 보아야 하며, 따라서 Hadley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.

### 일본 민법전

#### 제416조

: 손해배상의 청구는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생기는 손해의 배상을 하 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.

: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 할지라도 당사자가 그 사정을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# 만주 민법전

#### 제380조:

: 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불이행으로 인하여 통상 생기는

손해에 관하여 이를 할 수 있다.

: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생긴 손해라 할지라도 채무자가 그 사정을 예견 또는 예견할 수 있었을 때에는 채권자는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.

## 한국 민법전

### 제393조:

: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.

: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.